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8
----------	-----

제 출 일 : 2024. 11. 12.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1. 개정 이유

-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남양주 동부권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보건소 신설
  - 동부보건소 신설(안 제11조)
  - 신설 보건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설정(안 별표1)
- 상위 법령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 제26조)
- 동부보건센터 및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2)

##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동부보건소

제19조제3호라목 중 “천마산군립공원”을 “천마산시립공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로,  
“읍·면 출장소”를 “읍 출장소”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동부보건소와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

에서 처리한다.

제3조(중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9호란 다음에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남양주시장인민원사무동부보건소전용	
----	-------------------	--

②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풍양보건소”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로 한다.

소관 관·과		정 책 기 획 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팀장 황문희
	담당자 성명·전화	김상민 (031-590-8933)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소재지)	관할구역
본 청	남양주시청	(제1청사) 경춘로 1037 (제2청사) 경춘로 522	남양주시 전지역
직 속 기 관	남양주보건소	경춘로 522(다산동)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다산2동 전지역
	남양주풍양보건소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39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전지역
	동부보건소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전지역
	농업기술센터	진건읍 사릉로 234-46	남양주시 전지역
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	별내2로 88(별내동)	남양주시 전지역
	도로관리사업소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남양주시 전지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남양주시 전지역
하 부 행 기 관	와부읍사무소	와부읍 월문천로 35	와부읍 전지역
	진접읍사무소	진접읍 금강로 1509-26	진접읍 전지역
	화도읍사무소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읍 전지역
	진건읍사무소	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진건읍 전지역
	오남읍사무소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34	오남읍 전지역
	퇴계원읍사무소	퇴계원읍 도제원로 13	퇴계원 전지역
	별내면사무소	별내면 청학로8번길 22	별내면 전지역
	수동면사무소	수동면 비룡로 729	수동면 전지역
	조안면사무소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 전지역
	호평동주민센터	호평로68번길 21(호평동)	호평동 전지역
	평내동주민센터	경춘로 1286(평내동)	평내동 전지역
	금곡동주민센터	경춘로 899(금곡동)	금곡동 전지역
	양정동주민센터	홍유릉로 55(일패동)	양정동 전지역
	다산1동주민센터	다산중앙로 7(다산동)	다산1동 전지역
다산2동주민센터	다산지금로16번길 75(다산동)	다산2동 전지역	
별내동주민센터	별내3로 64-21(별내동)	별내동 전지역	
읍 출장소	화도읍 동부출장소	화도읍 경춘로 2192번길 8-11	화도읍 구암리, 금암리, 답내리, 월산리 전지역
	화도읍 남부출장소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108	화도읍 창현리, 녹촌리, 차산리 전지역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2]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1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소재지)	관할구역
진건보건지소	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진건읍 전지역
퇴계원보건지소	퇴계원읍 도계원로 13	퇴계원읍 전지역
수동보건지소	수동면 비룡로 729	수동면 전지역
조안보건지소	조안면 북한강로 433	조안면 전지역
별내보건지소	별내면 청학로 86	별내면 전지역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와부읍 월문천로 35	와부읍, 조안면 전지역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34	오남읍 전지역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별내3로 64-21(별내동)	별내면, 별내동 전지역
호평건강생활지원센터	호평로68번길 21(호평동)	호평동, 평내동 전지역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다산중앙로 7(다산동)	다산동 전지역
시우보건진료소	조안면 고래산로 413-48	시우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는 조례 개정 이후 부서별 추진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비용발생 요인 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폐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4A경기남양078)

1. 정책기획과-8115(2024.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이연희 팀장 연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전결 2024. 10. 18.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30831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여성아동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mailto: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3조(평가대상) 규정에 따라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부패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 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7건)

1. 남양주시 정책기획과-8112(2024. 10. 17.)호와 관련됩니다.
2.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법규명	내 용	검토결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립공원 및 행정기구명 변경 등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행정기구 신설·폐지 등에 따른 직무·직급 조정 - 개방형직위 지정 -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 등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 총 정원 변동 - 직급별 정원 변동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 총 정원 변동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권한 위임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고, 행위허가권한위임 및 장비 - 시 사무 및 근거 법규 정비 등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 사무 정비 등	규제사항 없음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신설 및 폐지부서 전결 권한 및 사무명 정비 - 전결 권한 정비 - 사무 신설 및 삭제 전결 권한 변경 등	규제사항 없음

3. 2.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 의 회 법 무 과 장

---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2024. 10. 17.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3529	(2024. 10. 17.)		접수	정책기획과-8131	(2024. 10. 1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a href="mailto:hgj1235@korea.kr">hgj1235@korea.kr</a>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